

수원지방법원 2021. 6. 3 선고 2020나766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

대한민국

피고, 항소인

김○○

제1심 판 결 2020. 7. 5. 선고 2019가단214902 판결

변 론 종 결

2021. 5. 6.

판 결 선 고

2021. 6. 3

주 문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BBB 사이에 2017. 12. 19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
피고는 BBB에게 광주지방법원 영광등기소 2018. 1. 3. 접수 제

7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2행의 ‘23004. 11. 11. 선고 20054가35533 판결’을 ‘ 2004. 11. 11. 선고 2004다35533 판결’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